

팩스를 통한 거래지시 약정서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15.06.08	2020.03.09	X	o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p>제3조 수권확인자의 지정</p> <p>신청서에 따른 자금이체거래 금액이 USD_____ (신청서 팩스 전송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귀 행은 아래의 수권확인자(들) 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권확인자에게 유선으로 통지한 후 통지를 받은 수권확인자는 첨부 1의 통지확인서를 귀 행에 팩스로 보냅니다. 단, (i)본인이 상기에 정한 금액 이하의 경우 또는 (ii) 수권자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원본 신청서를 전달 또는 신청서를 수정 내지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하는 경우, 귀 행은 콜백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로써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귀 행이 면책됨에 동의합니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귀 행이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상기에 정한 금액 이하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도 거래 금액에 따라 임의로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콜백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콜백 요청 시 절차에</p>	<p>제3조 수권확인자의 지정</p> <p>신청서에 따른 자금이체거래 금액이 USD_____ (신청서 팩스 전송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귀 행은 아래의 수권확인자(들) 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권확인자에게 유선으로 통지한 후 통지를 받은 수권확인자는 첨부 1의 통지확인서를 귀 행에 팩스로 보냅니다. 단, (i)본인이 상기에 정한 금액 이하의 경우 또는 (ii)수권자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원본 신청서를 전달 또는 신청서를 수정 내지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하는 경우, 귀 행이 확인전화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 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귀 행이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상기 금액 이하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임의로 확인전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절차에 따라 이에</p>	<p>면책 조항 수정,</p> <p>문구 정비</p>

	따라 성실히 확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성실히 확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2	<p>제4조 수권자 또는 수권확인자 변경</p> <p>수권자 또는 수권확인자 서명인의 성명 및/또는 서명 및/또는 신청서를 전달할 팩스번호 등에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은 즉시 서면으로 귀 행에 통지합니다. (첨부 2 & 3) <u>본인이 변경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본인 귀책 사유의 손실 및 기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u></p>	<p>제4조 수권자 또는 수권확인자 변경</p> <p>수권자 또는 수권확인자 서명인의 성명 및/또는 서명 및/또는 신청서를 전달할 팩스번호 등에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은 즉시 서면으로 귀 행에 통지합니다. (첨부 2 & 3) <u>변경 사실은 그 통지가 은행에 도달된 후 은행이 변경 사실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기며, 본인이 변경 사실의 통지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u></p>	면책 조항 수정
3	<p>제5조 신청서 전달</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귀 행은 <u>수권자가 전달한 신청서에 따라 거래를 완료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신청서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과 그 사유를 팩스로 해당 영업일 내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첨부 4)</u></p>	<p>제5조 신청서 전달</p> <p>(1) (좌동)</p> <p>(2) (좌동)</p> <p>(3) (좌동)</p> <p>(4) 귀 행은 해당 신청서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과 그 사유를 팩스로 해당 영업일 내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첨부 4)</p>	불합리한 문구 삭제
4	<p>제10조 거래방법</p> <p>(1) (생략)</p> <p>(2) (생략)</p> <p>(3) 또한 귀 행은 <u>거래내역 열람 및 확인을 목적으로 본 약정에 의해 지정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초 5영업일내</u></p>	<p>제10조 거래방법</p> <p>(1) (좌동)</p> <p>(2) (좌동)</p> <p>(3) 또한 귀 행은 <u>본인이 거래내역 열람 및 확인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거래내역을 수령희망하는 경우, 매 분기 다음</u></p>	거래내역 발송주기 및 발송조건 변경, 정기수령 희망여부 표시 신설

	<p>우편으로 수권확인자 앞 발송하도록 합니다.</p>	<p>월 5영업일내 본 약정에 의해 지정된 계좌의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을 우편으로 수권확인자 앞 발송하도록 합니다. 단,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귀 행이 거래내역을 발송하지 않으며, 본인이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거래내역 없는 경우 수령여부 포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 8)</p> <table border="1" data-bbox="719 683 1204 1153"> <tr> <th colspan="2" data-bbox="719 683 1204 741">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th> </tr> <tr> <td data-bbox="719 741 970 1153"> <input type="checkbox"/> 희망함 ※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수령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수령함 <input type="checkbox"/> 수령하지 않음) </td> <td data-bbox="970 741 1204 1153">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음 </td> </tr> </table>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함 ※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수령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수령함 <input type="checkbox"/> 수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음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함 ※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수령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수령함 <input type="checkbox"/> 수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음						
<p>5</p> <p>제11조 팩스 신청서 원본 징구 동의</p> <p>(1) (생략)</p> <p>(2) 다만, 은행이 원본을 받지 못하더라도 팩스를 통해 수령한 신청서에 따른 귀 행의 조치가 유효함을 확인하며, 추후 송부 받은 원본 문서와 팩스로 전송된 신청서가 상이한 경우에도 은행이 해당 신청서에 따라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p>		<p>제11조 팩스 신청서 원본 징구 동의</p> <p>(1) (좌 동)</p> <p>(2) 다만, 은행이 원본을 받지 못하더라도 팩스를 통해 수령한 신청서에 따른 귀 행의 조치가 유효함을 확인하며, 추후 송부 받은 원본 문서와 팩스로 전송된 신청서가 상이한 경우에도 은행이 팩스 신청서상의 날인/서명을 지정계좌에 신고한 인감/서명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 약정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 서류의 위조·변조·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다만,</p>	<p>면책 조항 수정</p>				

		은행이 본인의 인감이나 서명,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제13조 언어 본 약정서는 <u>영어와 한국어</u> 로 작성합니다. 단, <u>영어와 한국어</u> 약정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한국어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제13조 언어 본 약정서는 <u>한국어 및 중국어</u> 로 작성합니다. 단, <u>한국어와 중국어</u> 약정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한국어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언어 종류 변경
7	제14조 약정기간 본 약정서의 해지 시, 본인 또는 은행, 쌍방은 해지일 30영업일전에 귀 행 또는 본인에게 해지통지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 해지 통지 후 30영업일 후 본 약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 약정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해지 전에 실행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본 약정서 조항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14조 약정기간 본 약정서의 해지 시, 본인 또는 은행, 쌍방은 해지일 30영업일전에 귀 행 또는 본인에게 해지통지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 해지 통지 후 30영업일 후 본 약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 약정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해지 전에 실행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본 약정서 조항이 계속 적용됩니다. (<u>첨부 9 활용가능</u>)	약정 해지 통지서 활용가능 명시
8	제15조 타 약정서와의 관계 본 약정서에서 <u>달리 정하지 않는 한</u> , 본인은 <u>수신거래기본 약관</u> , <u>외환거래기본 약관</u> , <u>외국환거래법령</u> 및 은행의 기타 제약정에 따르기로 귀 행과 합의합니다. 본 약정서와 본인과 귀 행간에 체결한 기타 약정서 사이에 해석 상 상이한 조항이 있을 경우, 본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제15조 타 약정서와의 관계 본 약정서에서 <u>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u> 본인은 <u>예금거래기본약관</u> , <u>외환거래기본약관</u> , <u>외국환거래법령</u> 및 은행의 기타 제약정에 따르기로 귀 행과 합의합니다. 본 약정서와 본인과 귀 행간에 체결한 기타 약정서 사이에 해석 상 상이한 조항이 있을 경우, 본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용어 수정
9	(신 설)	<u>부 칙 (2020.3.9)</u> <u>제1조 기존 고객에 대한 효력</u> 본 약정서가 개정되면 기존 고객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거래내역을 정기수령하던 고객이 수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거래내역 없는 경우 수령여부 포함)에는 본 약정서 제10조 3항에 따라 이를 서	개정 시 기존 고객에 대한 효력 여부 신설

		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첨부 8. <u>약정 체결 통지서</u>	첨부 8. <u>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거래내역 없는 경우 수령여부 포함) 변경 신청서</u>	약정 체결 통지서 삭제,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거래내역 없는 경우 수령여부 포함) 변경 신청서 신설
11	(신 설)	첨부 9. <u>약정 해지 통지서</u>	약정 해지 통지서 신설

3. 담당부서명 : 개인금융업무부

팩스를 통한 거래 지시 약정서

중국공상은행 ○○지점앞

본인은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 팩스를 이용하여 은행에 전달하는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은행이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아래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팩스거래 서비스 개요

- (1) 본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입/출금 계좌를 지정계좌로 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은행에 거래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지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여 국내 자금 이체
 - ②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여 환전한 후 환전대금을 본인의 실명확인통장으로 입금
 - ③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여 해외로의 송금(송금 한도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범위내로 함)
- (2) 거래 지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 및 필요서류 추가 징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기타 은행 내규 등에서 허용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2조 수권자의 지정

본인은 아래 명기된 개별 수권자(이하 '수권자')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팩스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귀 행의 거래지시 신청서(이하, '신청서')의 작성 및 전달 또는 해당 신청서를 수정 내지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작성 및 전달하도록 위임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부서/직책	날인/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임장 또는 이사회 회의록 참조)

제3조 수권확인자의 지정

신청서에 따른 자금이체거래 금액이 USD _____ (신청서 팩스 전송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귀 행은 아래의 수권확인자(들) 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권확인자에게 유선으로 통지한 후 통지를 받은 수권확인자는 첨부 1의 통지확인서를 귀 행에 팩스로 보냅니다. 단, (i)본인이 상기에 정한 금액 이하의 경우 또는 (ii)수권자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원본 신청서를 전달 또는 신청서를 수정 내지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하는 경우, 귀 행이 확인전화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 행이 책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귀 행이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상기 금액 이하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임의로 확인전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절차에 따라 이에 성실히 확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부서/직책	날인/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임장 또는 이사회 회의록 참조)

제4조 수권자 또는 수권확인자 변경

수권자 또는 수권확인자 서명인의 성명 및/또는 서명 및/또는 신청서를 전달할 팩스번호 등에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은 즉시 서면으로 귀 행에 통지합니다. (첨부 2 & 3) 변경 사실은 그 통지가 은행에 도달된 후 은행이 변경 사실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기며, **본인이 변경 사실의 통지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신청서 전달

- (1) 본인은 팩스를 통한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 하단에 본 약정서에 의한 작성 수권자의 이름과 날인/서명을 기재합니다.
- (2) 귀 행은 본 약정서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수권자가 귀 행에 기 등록된 수권서명권자임을 확인 후 수권자가 전달한 신청서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 (3) 또한 **은행의 합리적인 견해로 볼 때 신청서상의 인감/서명과 지정계좌에 신고한 인감/서명이 육안으로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요청은 결정적으로 본인의 요청으로 간주하여, 본인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귀 행은 해당 신청서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과 그 사유를 팩스로 해당 영업일 내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첨부 4)

제6조 계좌의 사전 지정

본인은 사전에 지정된 지급계좌에 한해서만 귀 행에 거래지시를 요청하며, 국내 이체 거래에 한하여 수취 계좌를 지정합니다. (첨부 5)

제7조 지급 및 수취 계좌 변경

본인은 지급 및 수취계좌 변경(추가 또는 취소)시 귀 행에 이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 6)

제8조 수취 계좌번호 확인

본인은 신청서에 수취인의 이름과 수취인의 은행계좌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나 그 이름과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귀 행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며,(단 국내자금 이체에 한함) 귀 행이 본인에게 통지한 해당 영업일 이내에 본인으로부터 정확한 계좌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를 재 수령하지 못할 경우, 최초에 본인이 귀 행에게 전달한 신청서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 1일 거래한도 설정

본인은 1일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귀 행에 팩스거래 실행함에 동의합니다. (첨부 7)

제10조 거래방법

- (1) 본 약정에 의해 지정된 지정계좌는 기본적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귀 행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기 신고한 인감/서명으로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의 지시에 따른 처리 결과는 거래 완료 후 해당 영업일 내 수권자 앞 팩스로 발송하도록 합니다.
- (3) 또한 귀 행은 본인이 거래내역 열람 및 확인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거래내역을 수령희망하는 경우, 매 분기 다음 월 5영업일내 본 약정에 의해 지정된 계좌의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을 우편으로 수권확인자 앞 발송하도록 합니다. 단,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귀 행이 거래내역을 발송하지 않으며, 본인이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거래내역 없는 경우 수령 여부 포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 8)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함 ※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수령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수령함 <input type="checkbox"/> 수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음

제11조 팩스 신청서 원본 징구 동의

- (1) 본인은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은행에 전달한 경우, 은행의 관련 책임자/부서와 유선으로 연락하고 즉시 관련 원본 신청서를 등기 우편 또는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기로 합니다.
- (2) 다만, 은행이 원본을 받지 못하더라도 팩스를 통해 수령한 신청서에 따른 귀 행의 조치가 유효함을 확인하며, 추후 송부 받은 원본 문서와 팩스로 전송된 신청서가 상이한 경우에도 은행이 팩스 신청서상의 날인/서명을 지정계좌에 신고한 인감/서명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 약정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 서류의 위조·변조·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은행이 본인의 인감이나 서명,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면책

본 약정에 의한 지시 이행과 관련하여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 제 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언어

본 약정서는 한국어 및 중국어로 작성합니다. 단, 한국어와 중국어 약정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한국어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제14조 약정기간

본 약정서의 해지 시, 본인 또는 은행, 쌍방은 해지일 30영업일전에 귀 행 또는 본인에게 해지통지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 해지 통지 후 30영업일 후 본 약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 약정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해지 전에 실행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본 약정서 조항이 계속 적용됩니다.**
(첨부 9 활용가능)

제15조 타 약정서와의 관계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 법령 및 은행의 기타 제약정에 따르기로 귀 행과 합의합니다. 본 약정서와 본인과 귀 행간에 체결한 기타 약정서 사이에 해석 상 상이한 조항이 있을 경우, 본 약정서가 우선합니다.

제16조 준거법

본 약정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용하고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부 칙 (2020.3.9)

제1조 기존 고객에 대한 효력

본 약정서가 개정되면 기존 고객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거래내역을 정기수령하던 고객이 수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거래내역없는 경우 수령여부 포함)에는 본 약정서 제10조 3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 사 명 :	중국공상은행 ○○지점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인감 /서명 : (인) 년 월 일	인감 /서명 : (인) 년 월 일

첨부 1

통지확인서

(- -)

확인자인 본인은 귀 행으로부터 (통화: _____)금액: _____의 자금이체에 대해 유선으로
통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름 :

부 서 :

직 책 :

날인/서명 :

첨부 2

수권자 변경 신청서

(- -)

수신 : 중국공상은행 ○○지점

■ 수권자

본인은 수권자와 관련하여 변경/삭제/추가를 요청합니다.

구분	이름	생년월일	부서/직책	날인/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추가						

■ 위임

본인은 수권자의 변경/삭제/추가 업무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관 계 :
생년월일 :	연 락 처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인감 /서명 :

수권확인자 변경 신청서

(- -)

수신 : 중국공상은행 ○○지점

■ 수권확인자

본인은 수권확인자와 관련하여 변경/삭제/추가를 요청합니다.

구분	이름	생년월일	통지확인서 발송 기준 한도	부서/직책	날인/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추가							

■ 위임

본인은 수권확인자의 변경/삭제/추가 업무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관 계 :
생년월일 :	연 락 처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인감 /서명 :

첨부 4

거래지시 미 실행 통지서

(- -)

수신 : (회사명 기재)

당 행은 귀 사의 거래지시 신청서를 수령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래를 실행하지 않았음을 통지합니다.

1. 거래지시 신청서 정보

- 原 거래지시 신청일 :
- 原 거래지시 내역 :
- 原 거래지시 수권자 :

2. 미 실행 사유 :

은 행 명 : 중국공상은행 ○○지점 (인)

담당자명 :

연 락 처 :

첨부 5

팩스거래 약정 사전 계좌 지정 신청서

(- -)

수신 : 중국공상은행 ○○지점

1. 신청인

- 회 사 명 :
- 사업자번호 :
- 인감 /서명 :

2. 계좌의 사전 지정

본인은 아래 명기된 사전에 지정된 지급계좌에 한해서만 귀 행에 업무 처리를 위임하며, 국내 이체 거래에 한하여 수취 계좌를 지정합니다.

2-1. 지급계좌내역

No.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중국공상은행		본 신청서상의 '1. 신청인 - 회사명'과 동일함.

2-2. 수취계좌내역

No.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팩스거래 약정 사전 계좌 변경 신청서

(- -)

수신 : 중국공상은행 ○○지점

■ 지급 및 수취 계좌 변경

본인은 지급 및 수취계좌와 관련하여 변경/삭제/추가를 요청합니다.

구분	지급 혹은 수취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추가					

■ 위임

본인은 지급 및 수취계좌의 변경/삭제/추가 업무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관 계 :
생년월일 :	연 락 처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인감 /서명 :

첨부 7

1일 이체 한도 설정서

(- -)

수신 : 중국공상은행 ○○지점

1. 신청인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인감 /서명 :

2. 이체 한도 설정

본인은 1일 이체한도를 (통화:)금액: 로 설정함에 동의합니다.

첨부 8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거래내역 없는 경우 수령여부 포함)

변경 신청서

(- -)

수신 : 중국공상은행 ○○지점

■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거래내역 없는 경우 수령여부 포함) 변경

본인은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거래내역 없는 경우 수령여부 포함)를 아래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함 ※ 직전 1분기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수령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수령함 <input type="checkbox"/> 수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 않음

■ 위임

본인은 거래내역 정기수령 희망여부 변경 신청 업무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관 계 :
생년월일 :	연 락 처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인감 /서명 :

첨부 9

약정 해지 통지서

(- -)

수신 : 중국공상은행 ○○지점

본인은 귀 행과 기 체결한 팩스를 통한 거래 지시 약정 해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약 정 서 명 : 팩스를 통한 거래 지시 약정서
- 약정 체결일 :
- 약정 효력 만기일 :

■ 위임

본인은 약정 해지 업무를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관 계 :
생년월일 :	연 락 처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인감 /서명 :